

세금 보고 대행인(Tax Preparers)에 대한 소비자 권리

세금 보고 대행인(Tax Preparers)은 법규에 따라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 상담 이전에 본 문서의 사본을 고객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고객은 다음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세금 보고 대행인의 신원 및 자격.** 세금 보고 대행인은 관련 자격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및 국세청(IRS) 등록 에이전트는 이 사항을 게시할 의무가 없음에 유의하십시오.)
- **수수료 및 부가 요금.** 세금 보고 대행인은 제공하는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 목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 **서비스 요금 지불 및 환불과 관련한 고객의 선택 사항.** 세금 보고 대행인은 고객이 세금 정산 반환 예상금 수표(Refund Anticipation Checks, RAC), 세금 정산 반환 예상금 담보 용자(Refund Anticipation Loans, RAL), 환급금 송금(Refund Transfers)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 사항은 추가 수수료 발생, 세금 준비 수수료 및/또는 환급금 수령 지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보고 대행인이 정부 감사에서 고객을 대변하는지의 여부.** 감사에서 고객을 변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은 세금 보고 대행인은 대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세금 보고 대행인이 변호사(뉴욕 주 변호사 협회 회원) 또는 공인회계사(CPA)이고 뉴욕 주 교육부 직업 관리과(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the Professions)의 인증을 받았는지의 여부.** 세금 보고 대행인은 변호사 또는 CPA가 아닌지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이 경우에도 세금 보고 대행 업무 가능).

고객은 다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원본을 제출하거나 제출을 위해 고객에게 제공할 때 준비한 **세금 보고서 사본.** (참고: 세금 보고 대행인은 준비된 모든 세금 보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고객을 위해 준비된 각 서비스 및 양식에 대한 개별 비용을 나열하는 **항목별 영수증.** 영수증에는 연중 세금 보고 대행인과 연락할 수 있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나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환급금 신청을 위해 고객에게 세금 보고서 원본을 제공한 경우, **고객 요청 시 고객에게 반환되는 개인 서류**(세금 보고 대행인이 이러한 서류를 보관하도록 주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 제외).

자주 쓰이는 용어:

1040 양식은 “긴 양식”, 1040A 양식은 “짧은 양식”이라고 합니다. 1040 양식은 표준 연방 소득세 양식으로 개인 총소득을 보고할 때 사용합니다. 길이가 더 짧은 1040A와 1040EZ 세금 보고 양식보다 좀더 포괄적이어서 “긴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스케줄 C”는 간간히 1040 양식에 첨부되는 양식으로 고객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자영업자로 일하는 직업에서의 소득이나 손실을 보고하는데 사용됩니다.

고객은 납세 의무가 있는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경우 주 또는 연방 기관으로부터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빨리 세금 환급을 받는 방법은 IRS나 뉴욕주 조세재무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으로부터 고객의 은행 계좌로 **직접 계좌 이체**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뒷면에서 계속 >](#)

세금 준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전, 고객은 다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기본 청구 수수료, 이자율, RAL, RAC 및 환급금 송금 처리 수수료 및 기타 모든 관련 수수료 또는 비용이 포함된 세금 보고 대행인이 제공한 **각각의 서비스와 관련한 청구액의 총액이 명시된 서면 견적서**. 또한, 고객은 선택한 지불 방식 및/또는 환급 방식에 따라 반환금을 받기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예상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세금 보고 대행인이 제공한 RAL 또는 기타 모든 대출 서비스에 대한 **서면 예상 이자율**.
- 세금 보고 대행인이 제공한 **환급금 선택 사항 및 세금 서비스의 서면 목록**.

세금 보고 대행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고객으로 하여금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작성이 완전히 작성되지 않은 세금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하거나, 고객이 서명한 후 고객의 서면 동의 없이 세금 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령하게 될 환급금의 액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행위.
- 고객에게 특정 액수의 세금 환급금을 장담하거나, 정부 세무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장담하는 행위.
- 세금 환급금 중 일부를 세금 보고 대행인에게 지불하도록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행위.
-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이나 법원 명령 또는 법에 의해 그러한 정보를 받도록 승인된 사람 이외의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 세금 보고 대행인에게 환급금이 우편 발송되도록 지정하는 행위 (단, 고객이 이를 허용한다고 위임장에 서명한 경우는 제외).
- 정부 법규, 규정 또는 규제를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세금 정산 반환 예상금 담보 융자(Refund Anticipation Loans, RAL)에 관한 정보

- 세금 정산 반환 예상금 담보 융자(RAL)는 은행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소득세 환급금이 낮아집니다. 일부 RAL의 이율은 매우 높습니다. RAL은 “즉각적인 환급금”이 아니며 세금 보고 대행인은 이 용어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신속한 환급금(rapid refund)”, “급행 환급금(express refund)” 또는 “빠른 현금화(fast cash)”)를 사용하여 RAL이 대출이라는 사실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 RAL을 신청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세금 보고 대행인은 고객에게 RAL 신청을 요구할 수 없으며, RAL 신청을 위한 은행 수수료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이 RAL을 신청하기 전, 세금 보고 대행인은 우선 다음을 영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고객이 RAL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 RAL은 세금 환급금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라는 사실.
 - 예상되는 세금 환급금.
 - RAL 관련 은행 수수료 및 대출로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
 - 해당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 기간을 기준으로 한 예상 연 이자율(APR)로 계산된 금리.
 - RAL을 신청한 경우, 대출금을 받게 되는 예상 날짜.
 - RAL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환급금을 받게 되는 예상 날짜.
- 고객이 영어나 스페인어를 읽지 못하는 경우, 세금 보고 대행인은 해당 정보를 고객이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무료” RAL 및 기타 환급 전 상품에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RAC 및 환급금 송금에는 세금 준비를 위한 비용이 사전에 제외되지 않지만 환급금에서 해당 비용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환급 전 상품 등 세금 보고 대행인이 제공한 각각의 서비스와 관련한 청구액의 총액이 명시된 서면 견적서 및 RAL, RAC 또는 환급금 송금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환급금 수령 소요 기간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또는 개별 세금 보고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311로 전화하시거나 nyc.gov/dca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연소득이 \$66,000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보존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및 뉴욕시 양육비세제(New York City Child Care Tax Credit, CCTC) 같은 중요한 세액공제 청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NYC Free Tax Prep의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311번으로 문의하거나 nyc.gov/taxprep을 참조하십시오.



Bill de Blasio
Mayor

Consumer
Affairs

Lorelei Salas
Commissioner

뉴욕 시 소비자 보호국(DCA)은 뉴욕 시민의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보호하고 개선하여 활기찬 지역 사회를 만듭니다.